

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에 대한 고찰

민윤영*

국 | 문 | 요 | 약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는 2007년 미국의 Stark에 의하여 강압적 통제 개념이 제시된 것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에도 영향을 미쳐 2015년에 잉글랜드에서 강압적 통제가 범죄화 되었고, 이러한 입법의 흐름은 2018년 스코틀랜드에 이어 영국의 다른 관할권과 호주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강압적 통제 범죄는 기존의 형법적 개념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이 누적되어 구축되는 강압과 통제의 패턴을 범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여 가정폭력의 실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풍성한 해외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통제 개념은 아직 한국의 법에는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압적 통제 개념은 가정폭력을 자유에 대한 범죄로 재해석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인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라는 초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가정폭력피해자는 '사적 삶에 얽매진 인질'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적실하고 유용하며, 신중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소개하고 강압적 통제를 통해 새롭게 이해된 가정폭력 범죄의 실체에 대하여 고찰하며(II), 강압적 통제 개념이 가정폭력의 위험성 평가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의 필요성을 검토한다(III). 마지막으로 강압적 통제 범죄에 관한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IV).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강압적 통제 범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도 간략하게 덧붙였다(V).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6.30.2.31>.

❖ 주제어 : 강압적 통제, 인질, 가정학대, 가정폭력, 젠더폭력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Ph.D.)

I. 가정폭력에 대처할 혁신적 법률의 등장

스코틀랜드가 2018년 제정한 Domestic Abuse (Scotland) Act 2018은 가정폭력 중 배우자(또는 친밀한 관계¹⁾)의 파트너간 폭력에 대한 대처를 혁신적으로 바꾼²⁾ 법률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³⁾을 바라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영미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형법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심리적, 정서적 또는 경제적 학대 등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강압과 통제의 패턴’을 가정학대⁴⁾ 범죄로 규정하여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 경험을 충실히 반영한 법이라 평가된다. 이처럼 영미권이 강압적 통제 개념을 수용하여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법을 선진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법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는 아직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의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 남성 1.3%로 나타났고, 통제를 포함한 5개 유형의 폭력⁵⁾의 경우에는 폭력 피해율이 여성 28.9%, 남성 26.0%로 나타나⁶⁾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음

1) 여기서 친밀한 관계는 intimate relationship을 번역한 것이며, 이는 신체적(性적), 정서적 친밀함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2) Vanessa Bettinson, “Scotland gives hope to world's domestic abuse victims”, 2018.2.12., <https://www.scotsman.com/news/opinion/columnists/vanessa-bettinson-scotland-gives-hope-world-s-domestic-abuse-victims-1431998> (2021.5.30. 검색)

3) 가정폭력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 뿐 아니라 노인폭력, 아동폭력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간의 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로 가정폭력 중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비율이 59.6%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박다혜, “가정폭력 통계 수집 때 가해자를 ‘배우자’라고 표기 못 해…개선 필요”, 2019.5.2.,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92460.html#csidx3fd5948493933eea6fa86524243e51f> (2021.5.28. 검색)

4) 스코틀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폭력이 아니라 가정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기존의 용어인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 등 가시적인 ‘폭력’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반성하며,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에 균형 있는 강조점을 두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대부분 가정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5)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4개 유형 폭력’으로, 통제까지 포함 할 경우 ‘5개 유형 폭력’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25), 여성가족부, 2019, 82쪽 참조.

6) 위의 글, 81쪽.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해의 가정폭력 관련 경찰 신고 건수도 20만 건을 상회한다.⁷⁾ 또한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85명 이상으로 추산되어, 그 해 살인범죄로 사망한 전체 피해자 282명의 30%에 달했다⁸⁾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과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제1조에서 입법목적으로서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법의 입장은 가정폭력범죄의 법적 처리에 있어 가정보호가 목적으로서 앞서서 결과를 낳고 있고, 가정폭력은 범죄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있을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여겨져, 1%대의 경찰 신고율, 10% 미만의 기소율을 보이며⁹⁾ 처벌은 가볍다.¹⁰⁾ 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8년도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한 폭력을 행사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¹¹⁾, 가정폭력 사건이 법적으로 대응됨에 있어 사소화 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7) 경찰청 보도자료,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2019.7.1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901> (2021.5.25. 검색)

8) 경찰청 보도자료, 위의 기사 참조.

9) 이슬, “1% 신고율·10% 기소율 ‘가정폭력’...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연대 창립”, 2019.3.8.,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903080001360103 (2021.5.25. 검색); 조서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9, 4-5쪽 참조.

10) 한 예로 2017년과 2018년 9-11월의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로 1심 선고형이 확정된 401건 중 징역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이 58.4%, 벌금 선고가 24.2%, 징역 실행이 선고된 건이 8.5%였으며, 징역 개월 수는 1년 미만이 67.5%였고 평균 벌금액은 228.74만원이라는 점은 박복순·전혜상·정수연·고현승,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1):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xiii 참조; 사법연감 2019에 따르면 2019년 처리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사건 64건 중, 유기 자유형이 17건, 집행유예 19건, 재산형 21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9』, 법원행정처, 2020, 957쪽.

11) 총 324명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109명(33.6%), ‘배우자의 목을 조른 경우’가 43명(13.3%),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가 71명(21.9%),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두른 경우’가 70명(21.6%)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2019.4.16., http://lawhome.or.kr/webbook/gapok_counselsta2018/index.html#page=4 (2021.5.25. 검색) 참조.

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단일 범죄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중 ‘배우자’로 표기하는 항목이 없어 배우자간 가정폭력 범죄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것¹²⁾도 가정폭력의 문제가 제대로 대응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안이다. 심각한 폭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자가 결국 살해되는 사건들¹³⁾이 반복되는 현상이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라 가해자를 퇴거시켜달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떼쓰지 말고 좋게 서로 양보하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가 피신을 해야 했던 사건¹⁴⁾ 등은 사법부와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오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시급히 선진화할 필요성이 크다.

스코틀랜드의 가정학대 관련 법의 혁신성은 이 법이 토대로 하고 있는 ‘강압적 통제’ 개념에 기대고 있다. 미국에서 등장한 이 개념은 2015년 잉글랜드(England and Wales)¹⁵⁾의 Serious Crime Act 2015의 Section 76(이하 s.76 SCA 2015)을 통해 실정법에 범죄로서 수용되었고,¹⁶⁾ 뒤이어 잉글랜드의 법보다 더 통합적인 관점을 취하는 스코틀랜드의 Domestic Abuse (Scotland) Act 2018(이하 DASA)로 수용되었다. 이후 아일랜드 공화국은 Domestic Violence Act 2018의 Section 39를 통해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였고, 북아일랜드가 마침내 2021년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입법을 마침으로 인해, 영국 전역이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게 되었다. 영국 뿐 아니라 호주에서도 2004년에 태즈메이니아 주가 처음으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였으며, 다른 관할권에서도 법

12) 박다해, 주 3)의 기사 참조.

13) 최유경, “또 남편이 아내 흉기 살해...“과거 2차례 폭력 신고””, 2018.12.7.,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48540> (2021.5.25. 검색)

14) 이가람, ““판사 할 일...떼쓰지 말라” 되레 매 맞는 아내 울린 경찰”, 2021.5.3., <https://news.joins.com/article/24048788> (2021.5.25. 검색);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실패,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거나 가정폭력 사건을 집안 내의 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며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기 등을 언급하는 강지은·노주애·이승원·이수정, “가정폭력사건의 조기 개입을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교정담론, 제4권 제1호, 2020, 100쪽 참조.

15) 영국은 복수의 관할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하나의 관할권에 속해있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 독자적인 관할권을 형성한다.

16)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민윤영, “한국의 부분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와 형사정책적 함의 - 강압적 통제론과 네크로필리아”,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2017, 97~100쪽 참조.

적 수용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를 범죄화하는 입법의 국제적 흐름”¹⁷⁾이라고 묘사되기도 한다.¹⁸⁾ 이스탄불 협약의 제33조가 가입국들로 하여금 강압적 통제와 같은 여성을 향한 심리적 폭력을 범죄화하도록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정법체계에서 강압적 통제 개념은 아직 인식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법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맥락에서의 범죄 개념을 그대로 활용해 가정폭력에 대처하고자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젠더 불평등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누적적인 효과를 가지는 지속적인 학대”¹⁹⁾라는 피해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고려할 때, 강압적 통제는 가정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유용성을 갖는다.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법의 “좁고 한시적인 관점과 피해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²⁰⁾을 극복하여, ‘신체적 폭력이 최악의 부분인 것이 아니며’²¹⁾ 피해자의 자유와 자율성을 파괴하는 강압적 통제 행위들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인질에 가까운 트라우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인식될 때, 가정폭력 범죄가 신체에 대한 살인 뿐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강력한 범죄임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 즉 강압적 통제 개념은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새롭게 주지 시킴으로써 가정폭력을 사소화 하는 우리 법체계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영역,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영역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도록 지침을 줌으로

17) Ilona Cairns, “The Moorov doctrine and coercive control: Proving a ‘course of behaviour’ under s. 1 of the Domestic Abuse (Scotland) Act 2018”,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Vol. 24(4), 2020, 396.

18) 이러한 흐름은 영미법 국가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록 강압적 통제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도 2010년 혼인관계 내에서의 심리적 폭력을 범죄화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Loi no. 2010-769 du 9 juillet 2010(여성에 대한 폭력, 부부간의 폭력 및 이들 폭력이 아동에 미치는 결과에 관한 2010년 7월 9일자 법률)」 참조.

19) Cairns, 주 17)의 글, 399.

20) Deborah Tuerkheimer, “Recognising and remedying the harm of battering: A call to criminalise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94(4), 2004, 972.

21) “Violence wasn’t the worst part”이라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언은 강압적 통제 이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유명한 표현이다.

써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이고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중대한 사회악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가정폭력의 실체와 본질, 그리고 피해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폐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강압적 통제 개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소개하고 강압적 통제를 통해 새롭게 이해된 가정폭력 범죄의 실체에 대하여 고찰하며(II), 강압적 통제 개념이 가정폭력의 위험성 평가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강압적 통제 개념의 법적 수용의 필요성을 검토한다(III).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입법례로 영국에서 강압적 통제 범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도전과제들이 제기되어 왔는지를 논의한다(IV).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강압적 통제 범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간략하게 덧붙였다(V).

II. 강압적 통제 개념의 이해

최근에 강압적 통제 문제를 국제적인 관심사로 만든 Sally Challen의 재심을 담당한 변호인들은 강압적 통제 개념을 통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의 발전이 마치 DNA와 같은 과학의 발전이 판결의 확실성을 뒤흔들고 재심 사건들을 형성한 것과 같은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²²⁾ 영미법의 특성상 강압적 통제 범죄에 대한 확립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²³⁾ 영국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를 의존적이고 종속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를 인적 네트워크로부터 고립시키고 피해자의 자원과 개인적 소득을 위한 가능성을 착취하며, 독립, 저항, 탈출 그리고 일상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들(통제적 행위)과 피해자를 해하거나 처벌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폭행, 위협, 모욕, 겁주기 또는 다른 학대의 행위들의 패턴(강압

22) Vanessa Bettinson, “Aligning Partial Defences to Murder with the Offence of Coercive or Controlling Behaviour”, *Th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83(1), 2019, 72.

23) 강압적 통제 개념을 포함하는 가정폭력의 성문법적 정의는 Domestic Abuse Act 2021의 Section 1 참조.

적 행위)을 의미한다.²⁴⁾

1. 피해자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서 강압적 통제

우선 강압적 통제 개념의 가장 큰 시사점은 가정폭력 행위 각각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가정폭력 행위가 반복되며 형성되는 패턴을 종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패턴범죄라는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공포의 통치”²⁵⁾라는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보이지 않던 범죄

강압적 통제는 가정폭력 사건의 대다수에서 핵심적 요소를 이루지만²⁶⁾ 법이나 경찰 등에 의하여 인식되지 않았던 가해자의 학대행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피해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고 종속되도록 만들거나, 겁주거나 처벌하거나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가하는 통제와 착취, 위협적이거나 굴욕감을 주는 행동 등이 누적되어 형성되는 패턴을 말한다. 이 행위들은 피해자의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자아 감각(sense of self) 등을 파괴하여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만, 어느 문화권을 특정할 것 없이 “명백한 신체적 폭력은 없는 대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인 위협과 통제가 있는 경우, (그러한) 가정 학대 가해자들의 위험한 행위의 패턴을 정확히 확인”²⁷⁾ 하는 것은 실패해왔다. 즉 강압적 통제 행위는 보이지 않는 범죄였다. 이 점은 법이나

24)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definition-of-domestic-violence> (2021.5.25. 검색)

25) Tania Tetlow, “Criminalizing “Private” Torture”, *William & Mary Law Review*, Vol. 58 Issue 1 (2016-2017), 201-202 참조.

26) 영국에서 발생한 358건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92%에서 통제가 있었고, 94%에서 스토킹 또는 집착이 발견되었으며 고립은 78%의 사건에서 확인된다는 Monckton-Smith, J., Szymanska, K. and Haile, 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ing and homicide”, 2017, <http://eprints.glos.ac.uk/4553/1/NSAW%20Report%2004.17%20-%20finalsmall.pdf> (2021. 5.28. 검색) 참조.

27) Her Majesty’s Inspectorate Constabulary, *Everyone’s business; Improving th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abuse*, HMIC, 2014, 9.

경찰 등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러했다. 강압적 통제가 규정하는 행위의 패턴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대적 관계의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스스로도 그 부분이 심각한 범죄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학대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는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 행동으로 여겨지는 불평등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통제가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행위로 오인 될 수 있다. 이러한 ‘형법적 의미의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심리적 학대 등의 행위들’이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과 중합되어 반복됨으로써 구성되는 패턴을 포착해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은 강압적 통제 범죄의 독특한 특성이다.

강압적 통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은, 잉글랜드의 s.76 SCA 2015를 중심으로 열거해보자면, 피해자를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절연시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며, 피해자가 비인간화(de-humanized)되었다고 느낄 행위와 규칙을 강요하는 것,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 지인 등을 해치거나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공포를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거나 저항하거나 탈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기본적 필요를 채울 요소 등), 경제적 자원(직업 등)을 박탈하며, 피해자를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피해자의 일상(옷 입는 방법이나 심지어 서거나 앉는 방법, 만나는 사람이나 가는 장소, 수면 시간 등 시간의 사용 등)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위(마이크로매니징), 필요한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차단하는 행위, 또는 가스라이팅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자신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스스로 의심케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²⁸⁾

강압적 통제 행위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행위들을 모두 포함한다. 즉, 강압적 통제 행위는 어떤 한 유형의 학대 행위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학대 행위들이 ‘통제와 종속’을 형성할 목적으로 누적되고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구성된다. 가해자는 자신들의 관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취사선택하여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강압적 통제 개념 이전에는 신체적 폭력이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여겨졌다면, 강압

28) 자세하게는 Home Office, “Controlling or Coercive Behaviour in an Intimate or Family Relationship : Statutory Guidance Framework”, December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tutory-guidance-framework-controlling-or-coercive-behaviour-in-an-intimate-or-family-relationship> (2021.5.25. 검색), 10 또는 이에 대한 소개인 민윤영, 주 16)의 글, 100쪽 참조.

적 통제의 관점에서 신체적 폭력은 위협, 고립 그리고 통제와 같은 다른 중요한 전략들과 함께 통제적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전략 중의 하나’로 새롭게 자리매김 된다. 한 예로, “마비시키는 수준의 공포와 예측과 의존”이 성립한 강압적 통제 케이스의 1/4 정도는 신체적 폭력이 없거나 아주 적게 사용된 경우였다고 분석되기도 하였다.²⁹⁾ 이러한 접근은 지배와 통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 신체적 폭력이 마치 그 자체로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법적 개입의 주된 장소로 여겨짐으로써, 그러한 폭력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배’라는 범죄 행위가 은폐되는 것³⁰⁾을 멈출 수 있다.

나. 인질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

강압적 통제 개념은 기존의 사건 중심의 가정폭력 개념을 비판하면서, 가정폭력은 단발적인 신체적 폭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의 패턴을 통해 “남성이 여성을 사적인 삶에 묶어매는(entrap) 것”³¹⁾에 있다고 새롭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될 때 가정폭력 피해자는 멍든 눈, 터진 입술 같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인질’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이해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파트너/학대자가 창조한 혼돈, 모순, 공포의 세계에 묶어매진 인질로, 가해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통제되고 그 통제에 따라 행위하지 않을 경우 가혹하게 처벌되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이러한 스타크의 설명은 이수정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묘사하며 “우리에 갇힌 채 끊임없이 학대 받는 동물과 비슷한 트라우마를 갖는다”³²⁾라고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인간성의 핵심이 부인되는 범죄라는 점이 드러난다. 강압적 통제 개념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자신의 인간성이 부인되는 인질 상황을 오래도록 겪으면서,

29) Evan Stark, “The Dangers of Dangerousness Assessment”, *Family & Intimate Partner Violence Quarterly*, Vol. 6, No. 2, 2013, 19.

30) 위의 글, 21.

31) Evan Stark,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32) 이지훈, “참다못해 상습폭력 남편 살해, 정당방위 인정 1건도 없었다”, 2018.7.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711/90994272/1> (2021.5.22. 검색)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생활의 파괴, 경제적 결핍 등 총체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강압적 통제 개념이 없다면,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황은 ‘배우자의 좀 특출난 모난 구석’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심각하게 오해될 수 있다.³³⁾

다. 맞춤형 패턴으로서 강압적 통제 행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특수성에 대한 강조도 강압적 통제 이론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과 배우자에 의해 가해지는 일상적인 ‘루틴(routine)’으로서 강간’은 피해자에게 미치는 충격과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 각각의 폭력 사건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종합하여 루틴과 패턴을 확인하는 것은 생활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파악함에 있어 필수적이며,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 된다. 강간과 같이 이미 형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 뿐 아니라,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 등 ‘아직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범죄 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누적되어 패턴을 이루어 발생하는 ‘중범죄’로서 강압적 통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정폭력은 ‘심각하지 않은 자잘한 사건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귀찮은 영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심각하지 않은 자잘한 사건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날 때, 인질이 된 것 같은 자유의 구속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자살경향성을 현저히 높이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처럼 패턴으로서 형성되는 중범죄로서 강압적 통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가정폭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부적

33) 스타크는 이런 측면에 대한 한 예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체포되었을 때 남편이 강요하던 ‘식사 메뉴’에 대하여 말을 하는 상황의 ‘의아함’에 대하여 언급한다. 남편을 살해한 상황에서 갑자기 식사 메뉴와 같은 지극히 사소한 이슈를 들고 나오는 아내의 반응은 강압적 통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이지만, 강압적 통제 개념을 통해 이해한다면 그녀가 강압적 통제 범죄의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로서 이해될 수 있다. 식사 메뉴의 강요는 단편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하지만, 남편이 정한 식사 메뉴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혹하게 처벌되는 등의 굴욕적인 상황과 다른 여타 강압적 통제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겪은 피해자는, 스타크의 표현에 따르자면, 일반적인 이성적, 윤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서리(Surrey) 경찰청에서의 강의로 “Understanding Coercive Control with Professor Evan Stark”, <https://www.youtube.com/watch?v=yFce-GbOds> (2021.5.25. 검색) 참조.

절하게 대처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하나는 낮은 수준의 폭행에도 모두 체포로 대응하도록 한 미국의 코네티컷과 뉴저지의 상황으로, 그러한 정책이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여겨 진지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2급의 경범죄 사건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 ‘2급 경범죄’ 사건들이 종합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증범죄가 가정폭력의 실질임에도, 그 부분이 간과되는 것이다. 또 반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사추세츠처럼 가정폭력 범죄 중 심각한 사건으로만 제한하여 대응할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가해 행위들이 반복되어 형성되는 패턴이 아예 수사망에 잡히지 않고,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들이 아무런 사법적 대응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³⁴⁾

또한 특징적인 것은 강압적 통제 행위는 각 가해 행동이 피해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깊이 신뢰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내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장 취약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각 피해자에게 더 효과가 있는 맞춤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2. 한국의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범죄 개념과의 비교

한국의 경우, 강압적 통제 개념은 학계나 여성인권운동의 현장 등에서는 두루 논의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수용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등에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있을 뿐, 실정법적 개념으로는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가.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우선 강압적 통제 개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³⁵⁾를 살펴보면, 강압적 통제 개념은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외에, 또 하나의 독립적인 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서 ‘통제’ 개념을 두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의 4개 유형에 대하여 총 22개의 질문이 있었던

34) 위에서 논의한 코네티컷과 뉴저지, 매사추세츠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Stark, 주 29)의 글, 19.

3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5)의 글 참조.

반면³⁶⁾ 통제 행동 유형에 대하여는 11개의 문항³⁷⁾이 구성되어 있어, 통제 행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피해 경험률을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통제 유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고(여성 25.4%, 남성 24.5%)하여서,³⁸⁾ 강압적 통제 개념이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실태에도 적실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우 일을 그만둘지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응답이 29.2%, 실제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15.3%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확인되어³⁹⁾,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자원의 착취라는 강압적 통제의 상황이 형성된 확대 관계가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할 가능성 또한 확인되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의 경우 통제 유형의 폭력을 따로 묻는 문항이 큰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압적 통제 개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통제를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폭력의 유형⁴⁰⁾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여러 유형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종합되어 발생하는 패턴으로서 강압적 통제 행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⁴¹⁾

36) 신체적 폭력 7문항, 성적 폭력 5문항, 경제적 폭력 4문항, 정서적 폭력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7) 질문된 11문항은 다음과 같다.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 하게 했다;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 하게 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 받는지 감시했다;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바람을 피운다고 자주 의심하고 비난했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사회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 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5)의 글, 93쪽.

38) 위의 글, 81쪽.

39) 남성 응답자의 경우,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가 7%, ‘일을 그만두었다’가 10%로 나타났다. 위의 글, 119쪽.

40)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4개 유형 폭력’으로, 통제까지 포함할 경우 ‘5개 유형 폭력’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은, 위의 글, 82쪽 참조.

41) 반면 배우자간 강압적 통제 행위 중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다른 행위의 유형들을 종합하여 ‘심리적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명명(命名)하고, 심리적 폭력을 감시와 고립, 일상의 통제, 인격적 무시, 위협 및 협박,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각 유형의 발생빈도를 측정할 연구로는 민윤영, 주 16)의 글이나, 더 자세히는 민윤영,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 및 범죄화에 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6, 22~83쪽 참조.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행위이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정의를 강압적 통제 개념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비록 가정폭력의 정의로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 여러 피해의 유형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개별적인 피해 중심의 접근으로서 여러 피해들이 종합되어 형성될 수 있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가정폭력의 본질적 실체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의 경우에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통해 범죄화되는 ‘형법적 의미의 범죄에 이르지 않는 행위’들은 가정폭력처벌법 하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일정 행위의 반복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패턴 범죄 프레임이 반영된 가정폭력범죄는 최근에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 심지어 이 죄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 강압적 통제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형성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통제나 위협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이 죄로 포섭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⁴²⁾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현행법상의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범죄 개념에는 강압적 통제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42) “야유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수원지방법원 2011.1.5. 선고 2010노4714 판결 참조.

Ⅲ. 가정폭력의 위험성 평가와 강압적 통제

강압적 통제 개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처해있는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피해자들의 실제 경험에 더 적합하도록 바꾸어준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는 사건들은 주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들일 것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살해는 피해자의 생명의 손실이라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장 위중한 가정폭력범죄임에 틀림이 없지만, 위와 같은 가정폭력범죄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은 가정폭력의 “더 전형적인 심각한 케이스들의 보다 더 보편적인 결과”⁴³⁾를 보지 못 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강압적 통제 개념은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적 상해 및 살해를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심각한 신체적 상해 및 살해가 일어나는 극단적 사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며 더 보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치명적일 수 있는 정신적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가정폭력의 유형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인식을 제공해준다.

1. 심각한 신체적 상해 및 살해의 예측 요인으로서 통제

2017년 한 해에 발생한 살인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282명이었는데,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의하여 살해당한 여성이 85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에서 현행 법과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강압적 통제 개념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스타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의 심각성의 수준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포, 의존, 고립 등의 강압과 통제의 정도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각하게 상해하거나 살해할 위험성을 예측할 더 적절한 요소가 된다.⁴⁵⁾ 그렇다면 강압적 통제 개념의 부재로 강압적 통제 범죄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범

43) Stark, 주 29)의 글, 16.

44) 경찰청 보도자료, 주 7)의 글 참조.

죄로 남아있는 상황은 심각한 상해나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유형의 피해자가 인식되지 못하고 간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압적 통제 개념이 활발히 수용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경찰청의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인 DASH(Domestic Abuse, Stalking and Harassment and Honour based Violence)의 27개의 질문 중 강압적 통제에 대한 질문이 7개이며, 이를 더 발전시킨 시범연구에서는 27개의 문항을 16개로 줄이면서 신체적 폭력과 피해에 대한 질문은 3문항으로 대폭 축소하고 그 외 13문항을 강압적 통제와 관련한 피해를 질문하는 데 할애하였다.⁴⁶⁾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통제 문제를 급박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현장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통제 관련 두 문항이 삭제된 상황⁴⁷⁾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상해 및 살해의 위험성의 중요한 예측 요소로서 강압적 통제가 가지는 중요성이 가정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체계에서 간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통제의 충동과 네크로필리아

통제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 및 살해의 위험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은 가해자의 통제에 대한 충동을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좀 더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다. 스타크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 뿐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것...마음, 신체, 영혼”⁴⁸⁾을 모두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충동 하에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지배의 충동은 극단적인 경우, 상대의 목숨까지도 지배하며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에 피해여성이 가해남성과의 분리를 시도할 때 살해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⁴⁹⁾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모든 면모를 통제하

45) Stark, 주 29)의 글, 19; 친밀한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25% 정도에서 가해자에 의한 뚜렷한 물리적 폭력이 없다가 ‘갑자기’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소개는 허민숙, “국가가 초래한,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37권 제1호, 2021, 234쪽.

46) 허민숙, 위의 글, 240~243쪽 참조.

47) 강지은, 주 14)의 글, 118쪽.

48) Stark, 주 29)의 글, 13.

49) 남성 가해자의 경우 분리로 인해 통제의 상실을 경험할 때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여 피해자를 자신의 의도대로 존재하는 ‘사물’로 만들고자 하는 충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왜 살해와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것인지는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의 개념인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를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⁵⁰⁾ 네크로필리아는 시체에호증을 뜻하는 것으로, 프롬이 생명에 대한 사랑인 바이오필리아(biophilia)와 대비하여 설정한 개념이다. 쉽게 말해, 통제에 대한 욕망은 대상을 생명이 빠져나간 시체로 만들고자 하는 네크로필리아적 욕망이며, 생명에 대한 사랑인 바이오필리아의 정반대에 놓이는 것이다. 생명은 통제될 수 없음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며, 통제가 가능한 것은 오직 생명이 없는 사물 뿐이기 때문이다. 프롬에 따르면 네크로필리아적 인간은 “통제를 사랑하며, 통제하는 행위 안에서 생명을 죽인다. 그는 생명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은 그 바로 본성상 질서가 없으며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¹⁾

이러한 강압적 통제의 네크로필리아적 경향성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상해하고 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질로 만들고 질식시키는 방향으로도 뻗어나간다. 이는 강압적 통제의 피해자인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5배나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⁵²⁾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강압적 통제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만연해 있으며 보편적인 가정폭력의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 피해인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살해 위험성 뿐 아니라, 자살경향성,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또는 올라미에 걸린 듯한 상태⁵³⁾ 등의 정신적인 위험과 치명적인 자유 박탈의 위험성도 포함하여 균형 있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분석은 위의 글, 18.

50) 네크로필리아 개념으로 부부간 심리적 폭력을 고찰하는 것은 민윤영, 주 16)의 글, 108~112쪽 참조.

51) Erich Fromm (황문수 역), “죽음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사랑”,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1987, 37쪽;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법적 논의에 적용해본 시도는 민윤영,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7, 299~332쪽 참조.

52) Bettinson, 주 22)의 글, 73.

53) Stark, 주 29)의 글, 17.

3. ‘올가미의 시스템’의 치명적 위험성

‘통제의 정도’가 가해자에 의한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요인이 된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서도, 강압적 통제라는 범죄의 ‘목적’이 상해나 살인 등의 신체적 폭력인 것이 아니며 ‘올가미의 시스템(system of entrapment)’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자유와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신체적 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폭력과 무관하게 강압적 통제 범죄가 그 자체로서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타크는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살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일부 사건에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강압적 통제라는 만연해 있는 심각한 케이스들의 더욱 보편적인 결과들을 외면하게 함으로써 고위험 케이스들의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⁵⁴⁾ 그러한 보편적인 결과들은 강압적 통제의 관점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로서 “학대적인 파트너가 여성에게 무엇을 하느냐 만큼이나 여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못 하게 하는지와 관련이 있”⁵⁵⁾는 것으로, 경제적 독립성, 표현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 제약 없이 의사결정을 할 권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침해이고⁵⁶⁾, 이는 움아매진 듯한 상태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여기서 움아매졌다는 것은 단지 통제로 인하여 꼼짝 못 하게 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반복되는 피해자화(repeated victimisation)”⁵⁷⁾의 사이클에 갇혀 점점 더 참혹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만큼이나 해로운 심각한 인권침해와 정신적 상해들이며, 자살경향성의 증대처럼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강압적 통제를 인지할 때 “고위험 요소의 다른 카탈로그”⁵⁸⁾가 드러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54) 위의 글, 16-17.

55) 위의 글, 21.

56) 위의 글, 21.

57) Leanne Freeman, Rachel Lily, “Relationship between coercive control and mental health”, 2020.10., <https://www.dartington.org.uk/ourblog/mh-coercivecontrol> (2021.5.30. 검색)

58) Stark, 주 29)의 글, 17.

강압적 통제가 비로소 드러내 보여준 이러한 위험성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기술이 일상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신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마저도 신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더욱 극심한 실질적인 통제가 매우 미세하고 촘촘하게 구축되고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도, 강압적 통제는 앞으로 법과 수사기관 등이 가정폭력을 이해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⁵⁹⁾

4. 강압적 통제와 권력의 불평등 문제

그런데 강압적 통제 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 구조라는 사회적 맥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 젠더불평등과 강압적 통제

강압적 통제 범죄가 젠더에 기반한(gender-based) 범죄라는 점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다.⁶⁰⁾ 다시 말해, 강압적 통제는 대부분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에게 가하는 범죄라는 것이다.⁶¹⁾ 이는 단지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강압적 통제 행위의 위험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재의’ 결론이 강압적 통제 범죄의 ‘본질’이 젠더에 기반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재

59) 관련하여 신상미, “웹캠·해킹·위치추적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가정폭력 증가”, 2019.11.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93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1.5.30. 검색) 참조.

60) 가정학대에 대하여 젠더적 접근을 취하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는 대표적으로 Scottish Government and COSLA, *Equally Safe: Scotland's strategy to eradicate violence against women*, COSLA, 2018 참조; 같은 맥락의 영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는 Home Office, 주 28)의 글, 7 참조; 젠더 문제로서 가정폭력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김용화·정준섭,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 2020, 113쪽 참조.

61)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모두에서 강압적 통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97~99%가 남성인 점에 대하여는 아래 IV.2. 참조.

강압적 통제 범죄 행위자의 ‘대다수’가 남성이지만, 실제로 영국에서 ‘극소수’이긴 하나 여성이 강압적 통제 범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스코틀랜드의 경우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부 남성이었다.⁶²⁾ 사실 강압적 통제 범죄의 위험성은 생물학적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 좌우된다. 그럼에도 강압적 통제가 젠더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형법으로 범죄화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일상적이고 사소한 행위들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어 피해자를 의존적이고 종속적이며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일상적이고 사소한 행위들’이 자행되는 ‘불균형적인 권력의 지형이라는 맥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등한 직급의 직장동료 두 사람이 서로를 미워해 심리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분명 ‘심리적 폭력’이지만,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쌍방의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모멸감을 준다면, 이 명백한 권력 불균형은, 평등한 직장동료 사이에서 있었던 심리적 폭력과 동등한 폭력의 외양을 띠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파괴력과 위험성을 야기 할 수 있다. 이것은 쌍방의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 또는 ‘학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젠더불평등이 공고히 자리하고 있는 사회이다. ‘가부장’의 권력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가족 문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가정 내 상황에서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보다 권력에 있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⁶³⁾ 그렇다면 통제적인 말과 행동은 여성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가 모두 할 수 있지만, 그 말과 행동이 강압적 통제 범죄가 범죄화하는 ‘지배적인’ 통제로 확립되는 경우는 권력을 가진 남성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 배우자에게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권력이 약한 측은 권력이 강한 측을 심리적 폭력 등을 통해 ‘종속적으로 만들어 지배’할 수 없다. 그저 스트레스를 주고 심리적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에 그칠 것이다.⁶⁴⁾ 그러나 이미 사회를 통해 분배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측의 심리적 학대는 권력이 약한

62) Scottish Government, “Criminal Proceedings in Scotland, 2019-20”, 2021.5.18., <https://www.gov.scot/news/criminal-proceedings-in-scotland-2019-20/>, 70. (2021.5.28. 검색)

63)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혼인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로도 이어진다.

64) 물론 이러한 심리적 괴로움을 야기 하는 것도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불균형에 기대어 형성되는 통제와 지배는 그보다 분명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나. 통제의 재해석

사회 내 젠더 불평등이 강압적 통제의 전략을 구성하는 하나의 예로 경제적 자유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다르게 취급한다. 같은 맞벌이라 하더라도 육아를 위해 누군가 퇴직을 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은 남성이 일을 유지하고 여성이 퇴직하여 육아를 하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상식’은 가정 내의 남성과 여성의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스타키 강압적 통제가 ‘어떻게 남성이 여성을 사적인 삶에 끌어내는가’의 문제라고 한 것을 상기해보면, 경제적 활동과 사회활동 등의 ‘공적인 삶’을 갖추는 것이 ‘사적인 삶에 피해자를 끌어매고자 하는’ 강압적 통제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로부터 자신의 ‘공적인 삶’의 가치가 남성과 다르게 매겨지는 여성의 경우, 이미 통제 문제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인 강압적 통제 행위자가 여성 피해자에게 ‘돈은 내가 벌어들 테니, 네 일터는 가정이다. 밖에 일하러 나다니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피해자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대표적인 전략인데, 이 말을 거꾸로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에게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일을 그만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⁶⁶⁾이 유의미하게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의 결과 여성과 남성이 통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비슷했다는 것의 의미가 다시 해석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통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같은 유형의 폭력’

6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될 정도로, 소위 ‘경단녀’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로 여겨지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경력단절여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말한다.

66) 여성의 경우, 지난 1년 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중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응답이 29.2%, 실제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15.3%였던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가 7%, ‘일을 그만두었다’가 10%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기울어진 권력관계’에서 피해자의 삶에 야기한 ‘효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간과되기 때문에 맥락을 제거한 채 사건의 발생 횟수를 측정하는 CTS(Conflict Tactics Scale) 방식의 실태조사는 현실을 왜곡할 위험성을 갖는다. 강압적 통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젠더의 문제를 이해할 때 강압적 통제 개념이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육체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폭력도 포함한다는 식의 폭력의 형태를 추가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왜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문제인지”⁶⁷⁾가 비로소 이해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정확한 공감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양성평등, 그 이후

그런데 이러한 측면은 사회 내 젠더불평등이 시정될수록, 강압적 통제 범죄의 젠더적인 측면이 희석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강압적 통제 범죄의 가해자가 주로 남성이었지만, 사회가 점점 더 양성평등을 향해 갈수록, 우선 강압적 통제 범죄는 개선될 것이고,⁶⁸⁾ 가해자의 성별 또한 평등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어갈 때 강압적 통제 행위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으리라 희망하는 것은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생각일 수 있다. 위에서 니크로필리아 개념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통제의 본능은 성별을 넘어선 ‘인간의 공통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정이 가장 폭력적인 사회적 그룹 중 하나라는 사회학적 주장⁶⁹⁾처럼, 가정은 가장 사적이고 친밀하기에 인간의 본능의 가장 원초적인 폭력성이 여실히 분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다. 그 악한 본능이 악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구축해낼 수 있는 맥락이 바로 권력의 불균형인 것이며, 따라서 젠더에 따른 불평등이 개선되고 가정 내 권력 지형이 성별에 따라 결정되는 정도가 완화될 때, 강압적 통제 범죄는 줄어들고 젠더적인

67) 허민숙,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2권 제2호, 2012, 80쪽.

68) 재산관리에 관하여 배우자 간에 의사결정의 권한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때, 성적 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및 통제 유형의 폭력의 발생빈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5)의 글, 85쪽)는 양성평등의 발전이 강압적 통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69) Richard J. Gelles,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2, No. 4, Decade Review, 1980, 878.

것이 아니게 되어가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 관계 내에서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그 불균형에 기반하여 강압적 통제 범죄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강압적 통제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사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좀 더 확장된 관점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들이 강압적 통제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고찰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자 커플이고, 아동에 대한 강압적 통제도 연구된다.⁷⁰⁾ 이러한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⁷¹⁾

IV. 강압적 통제 범죄 관련 영국 입법례

강압적 통제 개념의 법적 수용 필요성과 형사정책적 의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실제로 강압적 통제 범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s.76 SCA 2015와 DASA를 간략히 살펴보고,⁷²⁾ 각각의 법에 따라 강압적 통제 범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도전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70) Evan Stark and Marianne Hester, “Coercive Control: Update and Review”, *Violence Against Women*, 25(1), 2019, 91-98 참조.

71) Janice Ristock, *No more secrets: Violence in lesbian relationships*, Routledge, 2002, 57 참조.

72) 아일랜드공화국과 호주와 태즈메이니아 주 역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고 있지만, 모든 법률들을 소개하기에는 지면 상의 제약이 있어, s.76 SCA 2015은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한 영국의 최초의 법률로서 가장 기본적인 참조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DASA는 가정학대에 대한 황금률적 법률로 불린다는 점에서 두 법률만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태즈메이니아 주가 s.76 SCA 2015보다 10여년 앞선 2004년에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였으나, 해당 법률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s.76 SCA 2015를 고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법률의 소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대표적인 법률들인 s.76 SCA 2015와 DASA는 몇 가지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우선 강압적 통제 범죄를 독립적 범죄로 신설한 s.76 SCA 2015의 접근과는 달리, DASA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으면서 그 개념을 녹여내어 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학대 등을 통합하여 가정학대로서 처벌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s.76 SCA 2015는 친밀한 파트너와 가족구성원 모두에 적용되는 반면, DASA는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 국한되어 적용되며,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의 경우, s.76 SCA 2015는 현재 동거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나, DASA는 그러한 요건을 두지 않았다. 셋째, s.76 SCA 2015는 강압적 통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효과를 미쳤을 것을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하는 반면, DASA는 학대적 행위의 과정이 있었을 것과 가해자의 의도만을 묻는다. 두 법률 모두 강압적 통제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중범죄로 처벌한다.⁷³⁾

가. Section 76 of Serious Crime Act 2015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잉글랜드의 s.76 SCA 2015에 따라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① A가 B에 대하여 강압적이거나 통제적인 행위를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행했어야 하고(s.76(1)(a)), ② 행위 당시 A와 B는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s.76(1)(b)). ③ 해당 행위로 인해 B에게 심각한 효과가 나타났어야 하고(s.76(1)(c)), ④ A가 그 행위가 B에게 심각한 효과가 있을 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s.76(1)(d))일 것이 요구된다.

범죄의 행위 시에 A와 B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 있거나(s.76(2)(a)), 동거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거나 (s.76(2)(b)(i))⁷⁴⁾,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으며 현재 동거하고 있는 경우(s.76(2)(b)(ii))를

73) s.76 SCA 2015는 강압적 통제 행위를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DASA는 가정학대 범죄를 최대 1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74) 1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s.76(3))

의미한다. 즉 이 법은 배우자나 파트너와 같은 친밀한 관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또는 현재 동거 중인 이전의 친밀한 관계 사이의 강압적 통제적 행위를 취급하지만, 현재 친밀한 파트너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묻지 않음으로써 다르게 취급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A의 행위가 B에게, 최소한 두 건의 사안에서, 폭력이 행사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했거나(s.76(4)(a)), B의 일상적인 매일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심각한 경각심(alarm)과 고통(distress)을 야기한 경우(s.76(4)(b))를 의미한다.

나. Section 1 of the Domestic Abuse (Scotland) Act 2018

‘파트너나 전-파트너(ex-partner)에 대한 학대 행동’을 범죄화하는 DASA는 2018년 2월 통과되고,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가정학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A가 파트너나 전 파트너(B)에 대한 “학대적 행위의 과정(course of abusive behaviour)”⁷⁵⁾을 범했어야 하며, 나아가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s.1(1)). 그 두 요건은 합리적 사람이 그 행위의 과정이 B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겪게 할 만하다고 생각할 것과 A가 그 행위의 과정을 통해 B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에 대하여 개의치 않았을 것(reckless as to whether)을 말한다(s.1(2)). 위의 요건에서 심리적 피해란 공포(fear), 경각심(alarm)과 고통(distress)을 포함한다(s.1(3)).

‘학대적 행위’의 정의는 s.2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도적으로 그 폭이 넓다.⁷⁶⁾ 이 행위 들에는 B를 겨냥한 것으로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겁을 주는 행위 (s.2(2)(a)), B 또는 B의 자녀나 타인을 겨냥한 행위로서 s.2(3)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효과 중 하나 이상을 야기 할 의도를 가진 것 또는 합리적 사람이 s.2(3)에 규정된 관련 효과 중 하나 이상을 야기 할 만하다고 고려할 행동을 포함한다(s.2(2)(b)).

s.2(3)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효과’는 B를 A에게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으로 만드는 것(a), B를 친구, 친족 또는 다른 인적 자원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b), B의 매일의 활동을 통제, 규제, 모니터링 하는 것(c), B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d), B

75) s.10(4)에 따르면 ‘행위의 과정’이란 최소한 둘 이상의 사건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76) Cairns, 주 17)의 글, 399.

를 처벌, 비하, 모욕, 겁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e). s.2(2)(a)의 폭력적인 행위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s.2(4)(a)).

이 법이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스코틀랜드 형법에서 이미 범죄로 처벌되던 행위와 심리적, 정서적 학대와 같이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되지 않던 행위들을 함께 포착한다는 것이다.⁷⁷⁾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가 모두 포함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 법은 가정학대 범죄 행위가 아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⁷⁸⁾ 점에서도 선진적이다.

2. 적용현황

s.76 SCA 2015와 DASA 모두 시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실효성 등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질적인 평가는 유보하고 적용의 현황을 통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s.76 SCA 2015는 DASA 보다 적용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가. s.76 SCA 2015의 경우

잉글랜드에서 경찰에 신고된 강압적 통제 범죄의 피해신고는 2016/17년도⁷⁹⁾의 4,246건에서 2019/20년도의 24,8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⁸⁰⁾ 한편 같은 시기에 강압적 통제 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범죄 신고는 총 758,941건으로, 강압적 통제 범죄보다 30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⁸¹⁾ 강압적 통제의 기소 건수에 대하여는 두 가지 통계를

77) 위의 글, 399.

78) s.5 (aggravation in relation to a child)

79) 2016년 4월 1일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2019/20은 2019년 4월 1일에서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80) Home Office, “Review of the Controlling or Coercive Behaviour Offence”, 2021.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2825/review-of-the-controlling-or-coercive-behaviour-offence.pdf (2021.5.28. 검색), 14.

81) 위의 글, 16. 이에 대하여는 강압적 통제 범죄는 여러 행위가 종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반면, 여타 가정폭력은 사건 별로 기록된다는 차이가 있고, 강압적 통제는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위의 글, 17 참조.

소개할 수 있는데, 강압적 통제 범죄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들 중 가장 중한 범죄(principle offence)인지 여부에 따른 것이다. 강압적 통제가 가장 중한 범죄인 기소 건수는 2016년⁸²⁾ 155건에서 2017년 468건, 2018년 516건, 2019년 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유죄판결 건수는 2016년 59건, 2017년 235건, 2018년 308건, 2019년 305건으로 유죄율이 2016년 38%, 2017년 50%, 2018년 60%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52%로 소폭 하락한 경향성을 보였다.⁸³⁾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97~99%가 남성이라는 특징을 보였다.⁸⁴⁾ 강압적 통제가 가장 중한 범죄는 아닌(non-principal offence) 경우를 포함하는 실험적 통계(experimental statistics)⁸⁵⁾에 따르면, 강압적 통제 범죄의 기소는 2017년 총 911건, 2018년 총 945건, 2019년 총 1,1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⁸⁶⁾ 강압적 통제가 가장 중한 범죄인 경우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2016년 48%에서 2019년 67%로 증가했으며, 여타 가정폭력 관련 범죄들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⁸⁷⁾ 뿐만 아니라 강압적 통제 범죄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징역 5년으로 여타 가정폭력 범죄에 비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형량이 2017년 17개월, 2018년 20.2개월, 2019년 23.6개월로 꾸준히 증가해, 여타 가정폭력 범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⁸⁾ 이는 법원이 강압적 통제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해악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도 강압적 통제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유능성을 갖춰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⁸⁹⁾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는데, 강압적 통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복적인 학대 행위와 심각한 해악의 결과를 증거로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케이스들만 법원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⁹⁰⁾

82)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아래에서도 동일하다.

83) 위의 글, 22.

84) 위의 글, 23.

85) 아직 테스트 중인 통계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해서는 <https://www.ons.gov.uk/methodology/methodologytopicsandstatisticalconcepts/guidetoexperimentalstatistics> (2021.5.25. 검색) 참조.

86) Home Office, 주 80)의 글, 25-26.

87) 위의 글, 26.

88) 상해의 결과가 있는 폭행(assault with injury)의 평균 형량이 15개월 미만이라는 점은 위의 글, 28.

89) 위의 글, 28.

90) 위의 글, 28.

나. DASA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DASA는 s.76 SCA 2015 보다도 훨씬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간략한 정보만 기술하자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해당 범죄를 주요 범죄(main crime/offence)로 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건수는 264건으로, 이 중 206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유죄율이 84%에 이르러⁹¹⁾, 첫 해인 2016년 38%의 유죄율을 보였고 2019년에는 52%의 유죄율을 보인 잉글랜드와 큰 차이를 보였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남성은 202명, 여성은 4명으로 절대 다수(98%)가 남성인 것⁹²⁾은 잉글랜드의 경우와 같았다. 206명 중 자유형을 선고 받은 수는 37명(모두 남성)이었고 형량의 평균은 363일로⁹³⁾, 2년에 가까운 23.6개월의 평균 형량을 보인 잉글랜드와 차이를 보였다.

3. s.76 SCA 2015의 도전과제

s.76 SCA 2015에 따른 강압적 통제 범죄의 운용에서 주되게 지적되는 어려움은 여전히 신체적 폭력을 가정폭력의 주된 요소이자 강압적 통제보다 더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하는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개선문제외⁹⁴⁾ 증거 수집 문제이다.⁹⁵⁾ 특히 강압적 통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폭력 등의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된다.⁹⁶⁾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DASA는 s.76 SCA 2015의 접근법보다 더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우선 DASA는 강압적 통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효과를 미쳤을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기소의 초점을 가해자의 행위의 과정과 의도에 두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녀 등 피해자가 아끼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법으로

91) Scottish Government, 주 62)의 글, 4.

92) 위의 글, 60-61.

93) 위의 글, 70.

94) Home Office, 주 80)의 글, 31.

95) 위의 글, 32.

96) Cassandra Wiener, “Seeing What is “Invisible in Plain Sight”: Policing Coercive Control”, *The Howard Journal*, Vol. 56(4), 2017, 505.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⁹⁷⁾ 따라서 s.76 SCA 2015에 대하여는 DASA와 발을 맞추어 이 부분을 개정하도록 제안되고 있다.⁹⁸⁾ 피해자가 사법절차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법절차가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의 확장으로 악용되는 일도 적지 않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⁹⁹⁾

이러한 운용상의 개선점들에 대한 고찰 뿐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강압적 통제 행위의 범죄화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중요할 것이지만, 이 새로운 범죄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내기엔 아직 4년 간의 데이터 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진단이 있었고,¹⁰⁰⁾ 또 하나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것은 강압적 통제 행위의 실태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¹⁰¹⁾ 예를 들어 영국에서 2017/18년도에 16세~59세 사이의 성인이 경험한 강압적 통제 건수는 572,000~744,000건 정도로 추산되지만, 아직 확실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¹⁰²⁾ 이 부분은 우리도 공유하는 문제점이다.

V.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영국의 경우를 보면,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우선 위에 소개한 법률들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2010년 이래로 진행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에 중지부를 찍겠다는 국가적 아젠다¹⁰³⁾의 일환이다. 영국

97) Vanessa Bettinson, “A Comparative Evaluation of Offences: Criminalising Abusive Behaviour in England, Wales, Scotland, Ireland and Tasmania”. In *Criminalising Coercive Control – Family Violence and the Criminal Law* (McMahon, M. and McGorry, P. (eds)), Springer, 2020, 205.

98) Home Office, 주 80)의 글, 7.

99) Heather Douglas, “Legal systems abuse and coercive control”,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8(1), 2017, 84-99 참조.

100) Home Office, 주 80)의 글, 6.

101) 위의 글, 6.

102) 위의 글, 46.

103) 관련해서는 HM Government,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2016-2020”,

은 스토킹의 범죄화, 클레어법의 도입 등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이전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이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여성 할례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도입하고 있다.¹⁰⁴⁾ 그중 하나는 s.76 SCA 2015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거하지 않는 이전 파트너를 가정학대 범죄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치명적이지는 않은 질식(non-fatal strangulation)을 그 자체로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한 Domestic Abuse Act 2021이 2021년 4월 제정된 것이다. 강압적 통제 범죄가 여러 실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호흡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는 앵글랜드보다 10여 년이 앞선 2004년에 Family Violence Act를 통해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였으나, 해당 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만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004년부터 2014/15년도까지의 10년의 기간 동안, 정서적 학대와 위협을 범죄화한 s.9에 의해서는 오직 8명만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경제적 학대를 범죄화한 s.8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아예 없었다.¹⁰⁵⁾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20년 Hannah Clarke와 세 자녀가 극심한 강압적 통제 끝에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호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¹⁰⁶⁾에 대하여 아직은 신중해야 할 때라는 신중론이 펼쳐지기도 한다. 강압적 통제가 가정폭력 범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더라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⁷⁾ 이러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2004년 태즈메이니아 주의 어찌면 시기상

2016.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2166/VAWG_Strategy_FINAL_PUBLICATION_MASTER_vRB.PDF (2021.5.26. 검색) 참조.

104) 위의 글, 4.

105) 관련하여 Marilyn McMahon·Paul Mcgorrery, “Criminalising Emotional Abuse, Intimidation and Economic Abuse in the context of Family Violence: The Tasmanian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Tasmania Law Review*, Vol. 35, No. 2, 2017, 11.

106) Amanda Gearing, “Queensland moves to criminalise coercive control after murder of Hannah Clarke and her children”, 2021.2.17.,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feb/17/queensland-moves-to-criminalise-coercive-control-after-of-hannah-clarke-and-her-children> (2021.5.28. 검색)

107) Kate Fitz-Gibbon, Sandra Walklate, Silke Meyer, “Australia is not ready to criminalise coercive control—here’s why”, 2020.10.1., <https://theconversation.com/australia-is-not-ready-to-criminalise-coercive-control-here-s-why>

조였을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 이래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호주 사회의 인식이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또 하나의 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고위험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를 트래킹함으로써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관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으로서¹⁰⁸⁾ ‘가정의 유지’를 더 우선시하는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참고로, 현재 호주에서 1년에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 피해자의 수는 30여 명으로 집계¹⁰⁹⁾되어, 우리나라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영국과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의 상반된 결과에서 보이듯이, 강압적 통제 범죄의 입법화만으로는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가정폭력과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무르익을 때,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가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¹¹⁰⁾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도 이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강압적 통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¹¹¹⁾ 영국에서 스토킹에 대한 강경한 대처가 강압적 통제 범죄화에 선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

e-coercive-control-heres-why-146929 (2021.5.26. 검색)

108) Sean Nicholls, “NSW state budget 2016: GPS tracking for high-risk domestic violence offenders”, 2016.6.11., <https://www.smh.com.au/national/nsw/nsw-state-budget-2016-gps-tracking-for-high-risk-domestic-violence-offenders-20160610-gpfz5z.html> (2021.5.28. 검색)

109) Kelly Hughes, “Hannah Clarke’s domestic violence murder highlighted coercive control-but has anything changed?”, 2020.8.10., <https://www.abc.net.au/news/2020-08-10/anti-domestic-violence-laws-to-criminalise-coercive-control/12377952> (2021.5.28. 검색)

110)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와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운 난관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렬한 젠더 갈등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또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강압적 통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결시킨다는 국가적인 아젠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111) 스코틀랜드의 통계를 보면 DASA가 시행되기 전에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사안 중 평균적으로 71%가 가정학대 지표를 나타냈다. COPFS, “Domestic abuse and stalking charges in Scotland 2019 – 2020”, <https://www.copfs.gov.uk/images/Documents/Statistics/Domestic%20Abuse/Domestic%20Abuse%20and%20stalking%202019-20.pdf>, 9. (2021.5.28. 검색)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강압적 통제를 포함하도록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서 다시 정의하고 관련 법들을 그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이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¹¹²⁾ 일반 시민, 경찰¹³⁾과 검찰, 법원, 법조인 등에 대한 교육도 광범위하게 진행함으로써, 강압적 통제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부터 손상을 입히며 장기적인 효과를 남기는”¹¹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성급한 입법이 아니라, 신중하고 치밀한 입법과 법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탄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부적절한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에 빠뜨리는 실책을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해왔다.

가정은 소중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존재할 때 그러한 것이다. 허울 뿐인 가정은 오히려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극심한 착취와 학대,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의 특수성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될 때, 미래의 어느 날, 심리적 폭력과 인질과 같은 삶에 고통받다가 강압적 통제 범죄로 피해신고를 한 어떤 피해자에게 비로소 올바른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맞았는지나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네, 무슨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이다.¹¹⁵⁾

112) 김용화·정준섭, 주 60)의 글, 123~124쪽 참조.

113)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교육이 특히 더 중요해질 것이다. 관련하여 박혜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과제”, 이화센터 법학, 제12권 제1호, 2020, 227~230쪽 참조.

114) <https://www.gov.scot/news/domestic-abuse-act-in-force/> (2021.5.28. 검색)

115) Libby Brooks, “Scotland set to pass ‘gold standard’ domestic abuse law”, 2018.2.1.,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8/feb/01/scotland-set-to-pass-gold-standard-domestic-abuse-law> (2021.5.28. 검색)

참고문헌

- 강지은·노주애·이승원·이수정, “가정폭력사건의 조기 개입을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교정담론, 제4권 제1호, 2020, 87~123쪽.
- 김용화 정준섭,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 2020, 111~145쪽.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9』, 법원행정처, 2020
- 민윤영,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와 형사정책적 함의 - 강압적 통제론과 네크로필리아”,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2017, 93~125쪽.
- _____,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권 1호, 2017, 299~332쪽.
- 박복순·전혜상·정수연·고현승,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1):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박혜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 2020, 213~235쪽.
- 조서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2019.4.16., http://lawhome.or.kr/webbook/gapok_counselsta2018/index.html#page=4 (2021.5.25. 검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25), 여성가족부, 2019
- 허민숙, “국가가 초래한,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37권 제1호, 2021, 223~251쪽.
- _____,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2권 제2호, 2012, 69~103쪽.
- 경찰청 보도자료,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2019. 7.1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901>

(2021.5.25. 검색)

박다혜, “가정폭력 통계 수집 때 가해자를 ‘배우자’라고 표기 못 해…개선 필요”, 2019.5.2.,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92460.html#csidx3fd5948493933eea6fa86524243e51f> (2021.5.28. 검색)

신상미, “웹캠·해킹·위치추적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가정폭력 증가”, 2019.11.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93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1.5.30. 검색)

이기람, ““판사 할 일…떼쓰지 말라” 되레 매 맞는 아내 울린 경찰”, 2021.5.3., <https://news.joins.com/article/24048788> (2021.5.25. 검색)

이슬, “1% 신고율·10% 기소율 ‘가정폭력’…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연대 창립”, 2019.3.8.,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903080001360103 (2021.5.25. 검색)

이지훈, “참다못해 상습폭력 남편 살해, 정당방위 인정 1건도 없었다”, 2018.7.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711/90994272/1>, (2021.5.22. 검색)

최유경, “또 남편이 아내 흉기 살해... “과거 2차례 폭력 신고””, 2018.12.07.,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48540> (2021.5.25. 검색)

Erich Fromm (황문수 역), “죽음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사랑”,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1987

Vanessa Bettinson, “A Comparative Evaluation of Offences: Criminalising Abusive Behaviour in England, Wales, Scotland, Ireland and Tasmania”. In *Criminalising Coercive Control - Family Violence and the Criminal Law* (McMahon, M. and McGorrery, P. (eds)), Springer, 2020, pp 197-219.

_____, “Aligning Partial Defences to Murder with the Offence of Coercive or

Controlling Behaviour”, *Th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83(1), 2019, pp. 71-86.

Iiona Cairns, “The Moorov doctrine and coercive control: Proving a ‘course of behaviour’ under s. 1 of the Domestic Abuse (Scotland) Act 2018”,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Vol. 24(4), 2020, pp. 396-417.

COPFS, “Domestic abuse and stalking charges in Scotland 2019 - 2020”, <https://www.copfs.gov.uk/images/Documents/Statistics/Domestic%20Abuse/Domestic%20Abuse%20and%20stalking%202019-20.pdf> (2021.5.25. 검색)

Heather Douglas, “Legal systems abuse and coercive control”,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8(1), 2017, pp. 84-99.

Richard J. Gelles,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2, No. 4, Decade Review, 1980, pp. 873-885.

Her Majesty’s Inspectorate Constabulary, *Everyone’s business; Improving th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abuse*, HMIC, 2014

Home Office, “Review of the Controlling or Coercive Behaviour Offence”, 2021. 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2825/review-of-the-controlling-or-coercive-behaviour-offence.pdf (2021.5.28. 검색)

Home Office, “Controlling or Coercive Behaviour in an Intimate or Family Relationship : Statutory Guidance Framework”, December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tutory-guidance-framework-controlling-or-coercive-behaviour-in-an-intimate-or-family-relationship> (2021.5.25. 검색)

HM Government,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2016-2020”, 2016.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2166/VAWG_Strategy_FINAL_PUBLICATION_MASTER_vRB.PDF (2021.5.26. 검색)

- Marilyn McMahon·Paul McGorrery, “Criminalising Emotional Abuse, Intimidation and Economic Abuse in the context of Family Violence: The Tasmanian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Tasmania Law Review*, Vol. 35, No. 2, 2017, pp. 1-22.
- Monckton-Smith, J., Szymanska, K. and Haile, 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ing and homicide”, 2017, <http://eprints.glos.ac.uk/4553/1/NSAW%20Report%2004.17%20-%20finalsmall.pdf> (2021.5.28. 검색)
- Janice Ristock, *No more secrets: Violence in lesbian relationships*, Routledge, 2002
- Scottish Government and COSLA, *Equally Safe: Scotland’s strategy to eradicate violence against women*, COSLA, 2018
- Scottish Government, “Criminal Proceedings in Scotland, 2019-20”, 2021.5.18., <https://www.gov.scot/news/criminal-proceedings-in-scotland-2019-20/> (2021.5.28. 검색)
- Evan Stark, “The Dangers of Dangerousness Assessment”, *Family & Intimate Partner Violence Quarterly*, Vol. 6, No. 2, 2013, pp. 13-22.
- _____,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Evan Stark and Marianne Hester, “Coercive Control: Update and Review”, *Violence Against Women*, 25(1), 2019, pp. 81-104.
- Tania Tetlow, “Criminalizing “Private” Torture”, *William & Mary Law Review*, Vol. 58 Issue 1 (2016-2017), pp. 183-250.
- Deborah Tuerkheimer, “Recognising and remedying the harm of battering: A call to criminalise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94(4), 2004, pp. 959-1031.
- Cassandra Wiener, “Seeing What is “Invisible in Plain Sight”: Policing Coercive Control”, *The Howard Journal*, Vol. 56 (4), 2017, pp. 500-515.

- Vanessa Bettinson, “Scotland gives hope to world’s domestic abuse victims”, 2018. 2.12., <https://www.scotsman.com/news/opinion/columnists/vanessa-bettinson-scotland-gives-hope-worlds-domestic-abuse-victims-1431998> (2021.5.30. 검색)
- Kate Fitz-Gibbon, Sandra Walklate, Silke Meyer, “Australia is not ready to criminalise coercive control-here’s why”, 2020.10.1., <https://theconversation.com/australia-is-not-ready-to-criminalise-coercive-control-heres-why-146929> (2021.5.26. 검색)
- Leanne Freeman, Rachel Lily, “Relationship between coercive control and mental health”, 2020.10., <https://www.dartington.org.uk/ourblog/mh-coercivecontrol1> (2021.5.30. 검색)
- Amanda Gearing, “Queensland moves to criminalise coercive control after murder of Hannah Clarke and her children”, 2021.2.17.,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feb/17/queensland-moves-to-criminalise-coercive-control-after-of-hannah-clarke-and-her-children> (2021.5.28. 검색)
- Sean Nicholls, “NSW state budget 2016: GPS tracking for high-risk domestic violence offenders”, 2016.6.11., <https://www.smh.com.au/national/nsw/nsw-state-budget-2016-gps-tracking-for-highrisk-domestic-violence-offenders-20160610-gpfz5z.html> (2021.5.28. 검색)

Coercive Control as a Serious Domestic Violence Offense

Min, Yoon Young*

There is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in criminalizing coercive control in domestic violence cases, and the article raises the question as to whether South Korea should follow suit. A detailed exploration of the concept of coercive control is provided focusing on the reframing of domestic violence as a liberty crime and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as living like hostages (II). It furth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coercive control in assessing dangerousness in domestic violence cases and suggests a psychoanalytical understanding of coercive control to deeply understand the devastating impact of it (III). Additionally, the review of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ew criminal offense of coercive control in the U.K. is offered (IV). Finally, i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placing the criminalization of coercive control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agenda to end gender-based violence (V).

❖ key words: coercive control, hostage, domestic abuse, domestic violence, gender-based violence

투고일 : 5월 31일 / 심사일 : 6월 30일 / 게재확정일 : 6월 30일
--

* Dankook University Faculty of Law, Associate Professor.

